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부동산취득세 감면결정처리(*****)

2016.3.29. *****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과 신청서류를 검토 한 후 감면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.

가.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

법 인 명	**** *****		법인등록번호		*****	
주 소	***** *****		등기등록의종류		과세대상물건	
물 건 지	***** *****		신축		토지(m ²)	건물(m ²)
세 목	과세표준	세율	산출세액	감면(비과세)세액	차인액	감면비율
취 득 세	10,959,595,390	2.8%	306,868,670	306,868,670	0	100%
농 특 세	306,868,670	20%	61,373,730	61,373,730	0	비과세

나. 관계법령

(1)

지방세특례제한법

*****사업에 직접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
(2)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규정에 따

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(취득세 감면세액의 20%)

다. 신청서류 검토 및 감면 처리

*****가 *****을 신축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확인한 바, *****시설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기에 상기 법규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처리 하고자 합니다.

- 따로붙임 : 1.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서 1부
2.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. 끝.

주무관	신홍	법인2팀장	이영범	세무1과장	신길호	기획경제국장	전결 03/31 김용운
-----	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세무1과-6319 () 접수 ()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684 /전송 02-3423-8893 / ghink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